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. 4. 21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: 2021년 4월 8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1년 4월 12일
- 라. 상정일자: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4. 1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권희자)

- 가. 제안이유
 -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환경을 진단하고 모든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, 제2조)
 - 고령친화도시 연도별 계획 및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, 제4조)
 - 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,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 ~ 제9조)
 - 국제기구 가입, 교육 및 홍보, 예산 지원, 준용,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

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- 본 안건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환경을 진단하고 모든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임.

- 주요내용은
 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이고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 -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연도별 계획 수립·시행과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, 위원의 임기,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국제기구 가입, 교육 및 홍보, 예산 지원,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14%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경엔 20%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, 우리 구도 2021년 3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59,899명으로 전체 인구 377,590명 중 약 16%를 차지하고 있음.

-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입법의 필요성이 있으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36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1. 4. 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환경을 진단하고 모든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고령친화도시 연도별 계획 및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, 임기 및 운영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9조)
- 라. 국제기구 가입, 교육 및 홍보, 예산 지원, 준용,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
(안 제10조 ~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나. 협의사항

- 1) 위원회 운영사항 검토 결과: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
- 2) 예산수반사항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3) 규제심사 결과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5) 인권영향평가 결과: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1. 3. 4. ~ 3. 24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고령친화도시”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.

제3조(연도별 계획 수립 등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
2.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
3.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기초조사 등) ①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계획의 수립·시행
2.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
3.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
4. 그 밖에 위원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1. 당연직위원

가.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

나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

2. 위촉직 위원

가.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

나. 노인관련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국제기구 가입)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
제11조(교육 및 홍보)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

제12조(예산 지원)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